

1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사무 감사권
- ② 선결처분권
- ③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
-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의결권

해설

② (×)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열거주의로 규정)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개괄주의로 규정)
의결권	① <u>조례</u>의 제정 및 개폐 ② <u>예산</u>의 심의·확정 ③ <u>결산</u>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운용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① 통할·대표권 ② 사무의 관리·집행권 ③ 사무위임권 ④ 소속직원 임면 및 지휘·감독권 ⑤ 지도·감독권 ⑥ 규칙 제정권 ⑦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편성권과 집행권 및 지방채 발행권 등. ⑧ 기관·시설 설치권 ⑨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 의회 출석·진술권, 임시회 소집 요구권, 의안 발의권, 예산안 발의권, 의회 부의 안건의 공고권, 조례공포권(이송 20일 이내), 재의요구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행정 감시권	①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권 ②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 ③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출석·답변 요구권 ④ 의견표시권	
자율권	①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조례로 설치), 위원회 위원 선임, 사무조직의 설치. ② 의사(議事)자율권 : 의회규칙 제정권, 개회·폐회·휴회 결정, 회의의 공개 금지 결정. ③ 의회경찰권 :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 명령 등 ④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 의장·부의장·임시의장 등 선거, 의장·부의장 불신임의결권, 의원의 자격심사권·사직허가권, 의원에 대한 징계권(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 주의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은 지방의회의장이 가지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소집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광역의회)나 사무국장·사무과장(기초의회)이 함.

④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의장·부의장 선거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시·군·자치구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 임기는 2년. 의장·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 불가시 임시의장을 선출해 직무 대행.	
의장·부의장 불신임의결	지방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 가능. 불신임 의결시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됨. ☑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x) - 의장·부의장 직에서 해임	
의원의 사직허가	지방의회는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음(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 가능)	
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의회는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 청구 가능. 심사 대상인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음.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의원에 대한 징계	징계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가능
	징계 종류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단, 제명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배분 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 경합의 원칙 ② 중복배분의 원칙 ③ 종합성의 원칙 ④ 민간참여 최소화 원칙

해설

- ①② (x) 제9조 제1항에서 권한·책임 명확화 원칙(불경합성 원칙, 경합피지[競合避止] 원칙, 중복배분금지 원칙) 규정. 사무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구분하여 책임이 명확하도록 특정 사무가 한 단계의 정부단위에게만 배분되도록 하고 이중배분되거나 상호 간 중복배분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경합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처리).
- ③ (○) 제9조 제3항에서 포괄성 원칙을 규정. 포괄성 원칙은 종합성 원칙과는 원래는 차이가 있다. 포괄성은 사무 자체에 초점을 두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a, b, c, d의 사무가 필요한 경우 a만 딸랑 분배하지 말고 관련사무인 b, c, d 까지 모두 분배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종합성 원칙은 사무 수행 주체에 초점을 두어 관할 구역 안의 모든 사무를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가급적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 포괄성 원칙 :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종합성 원칙 : 관할구역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보다는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에게 집중적으로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 * ①②④가 확실히 틀리고, ③은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이란 표현이 있어서 ③을 옳은 지문으로 봄.
- ④ 제9조 제4항에서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를 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도 아래 ①②③항을 동일하게 규정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의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권한·책임 명확화 원칙(불경합성·경합피지[競合避止] 원칙, 중복배분금지 원칙)**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보충성(subsidiarity) 원칙 / 현지성 원칙(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포괄성·종합성 원칙**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답 ③

3

라이트(Wright)의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동시에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된다.
- ②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독자적인 사무영역과 처리능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협력을 할 필요도, 상호의존을 할 이유도 없다.
- ③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모두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한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 ④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함 관계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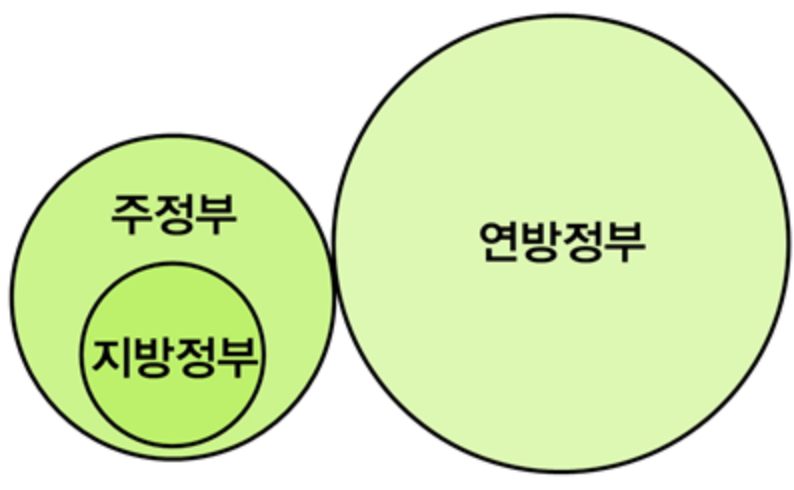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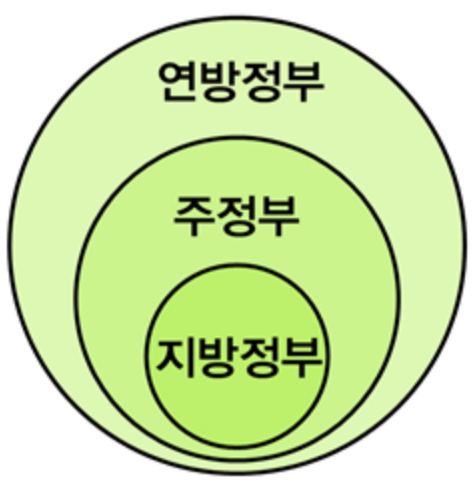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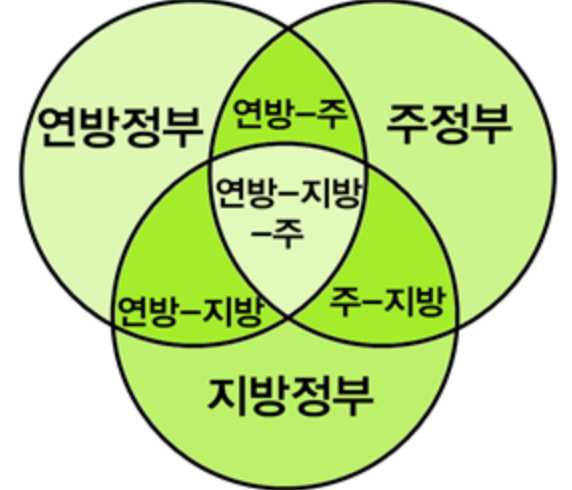
해설

- ① (x) 중첩권위모형에 대한 설명임

답 ①

라이트(D.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

분리권위형 (Separated Authority Model)· 동등[대등·협조·조정]권위형 (Coordinate Authority Model) 독립형·분리형	① 연방정부와 주정부 :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권위의 한계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상호독립적이고 주정부는 완전자치적으로 운영됨(주정부의 자치권은 고유한 권리로 연방정부의 의지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여 상호경쟁적 관계. 주정부가 처리하는 사무도 고유사무가 주종을 이루며, 재정·인사에서도 완전분리형을 취함(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협력 및 상호의존을 할 이유가 없음), 이원연방제(dual federalism)와 유사. ② 주정부와 지방정부 :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 지방자치권은 보통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 행사, ㉡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이며 주정부의 법에 의해 창설·폐지됨, ㉢ 지방정부는 주의회의 의지에 종속된 권한의 차용자(tenants)에 불과함. ⇨ 딜런의 법칙) ※ 딜런의 법칙(Dillon's Rule) : 1868년 아이오와(Iowa)주 대법관 딜런이 제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상 분리를 통한 주정부의 독립성,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법적 우위를 주장. 자치권을 고유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포괄권위형 (Inclusive Authority Model) 내포형·포함형	①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완전히 포괄(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의존적이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의존적임) ② 중앙집권적 체제 하의 연방정부의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 . 주와 지방정부는 명목상의 통치주체로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존,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역의 중요결정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집행만 하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재량권으로 창조·폐지 가능하며, 법적인 보장에 의해 좌우됨) - 명목적 연방제, 집권적 연방제, 국가적 연방제. ※ 연방-주-지방 정부간 의존관계는 분리권위형의 주-지방관계(종속관계)와 유사(딜런의 법칙 적용 가능) ③ 지방정부의 재정·인사는 중앙정부에 완전 종속,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는 대부분 기관위임사무 ④ 정부 간 관계를 종속관계로 보므로 게임이론으로 설명 가능(영합게임, 비영합 게임[non constant game]).
중첩[중복]권위형 (Overlapping Authority Model) 상호의존형	① 연방·주·지방정부 간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각각 자기 영역을 가지고 공통관심과 이익에 상호의존·협력 . 포괄권위형과 분리권위형의 절충. ② 제한적으로 분산된 권력, 제한된 자치영역, 협력과 경쟁의 동시성 : 정부기능이 연방·주·지방정부에 중복되어 자치권은 적고, 타 정부에 대한 권력·영향력도 제한적이며 하나의 정부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많지 않음. 인사는 상호교류, 재정은 상호의존. ③ 협상 이 최상의 권한 행사유형. 많은 공공기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고 상호 간 갈등이 정치적 타협(compromise) 과 흥정(bargaining) , 협상(negotiation) 등 상호교환 관계를 통하여 해결됨. ④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공존하고 고유사무가 더 많으며 위임사무 중에는 단체위임사무가 더 많음. ⑤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복잡한 행정환경을 고려할 때 현대의 정부 간 관계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줌 .

구분	분리권위형·동등[대등·조정]권위형·독립형	포괄권위형·내포형	중첩[중복]권위형·상호의존형
관계	독립적(independent)(단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 	의존적(dependent)·종속적·수직적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권위패턴	자율(자치 ; autonomy)	계층제(hierarchy)	협상(교섭 ; bargaining)
인사	완전 분리	완전 종속	상호교류
재정	완전 분리	완전 종속	상호의존
하위정부 사무분담	주로 고유사무	주로 기관위임사무	고유사무 + 위임사무 혼재 고유사무 > 위임사무(단체위임 > 기관위임)

4 자치제도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 500만 이상의 시·도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수를 최대 4명 이하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재정, 감사위원회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③ 자치구는 도시계획, 지역경제, 상수도 등에서 시·군과 권한을 달리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고 있다.

해설

- 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는 3명 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1항에 따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는 부시장 2명** 됨.

-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 부단체장 신분 및 선임방식(지방자치법 제12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	부단체장의 공직분류	
광역	특별시	3명	행정부시장(2인)	정무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시장(1인)	정무직 지방공무원
	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2명(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는 3명)	행정부시장·부지사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기초	시·군·자치구	1명	정무부시장·부지사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2명	일반직 지방공무원(직급은 인구규모에 따라 지방 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	2명 중 1명은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

③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별표 2에 도시·군계획사무, 지역경제육성 업무, 상수도 사업 사무 등을 규정.

답 ①

5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경부장관은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A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 ④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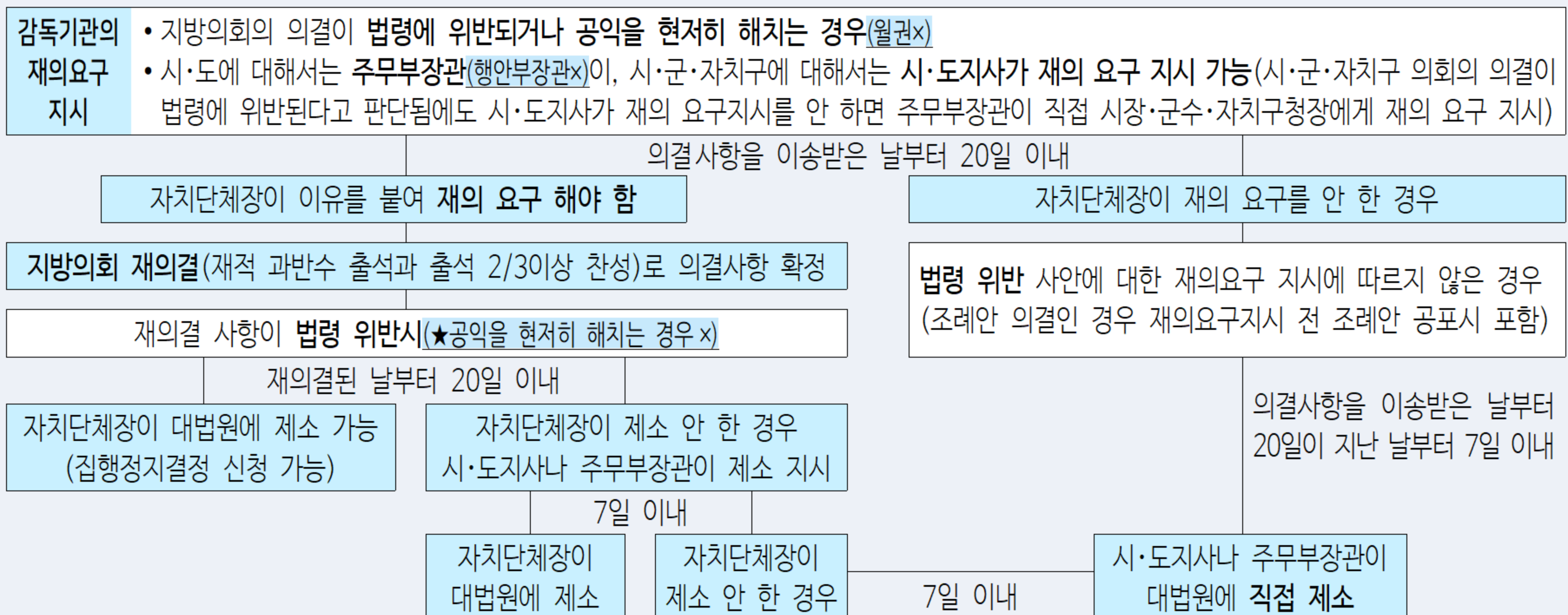
해설

④ (×) 재의결된 사항에 대한 대법원에의 제소는 법령 위반 사항의 경우에만 한정된다.

• 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및 제소(지방자치법 192조)



답 ④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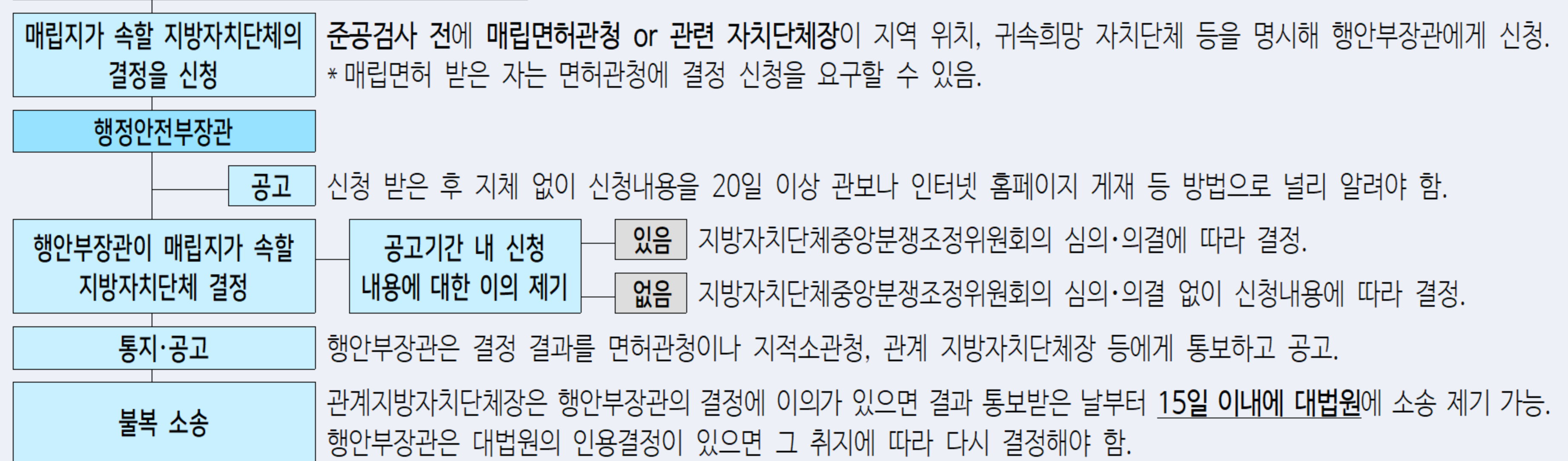
A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해안지역의 해수면 매립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 ② 관내 해안지역을 매립한 것이므로 매립지는 당연히 A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게 되지만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 ③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매립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였다면, 매립된 지역은 A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다.

해설

- ② (×)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행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을뿐임.
- ③ (×)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매립지 소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 매립 공사 시작 이전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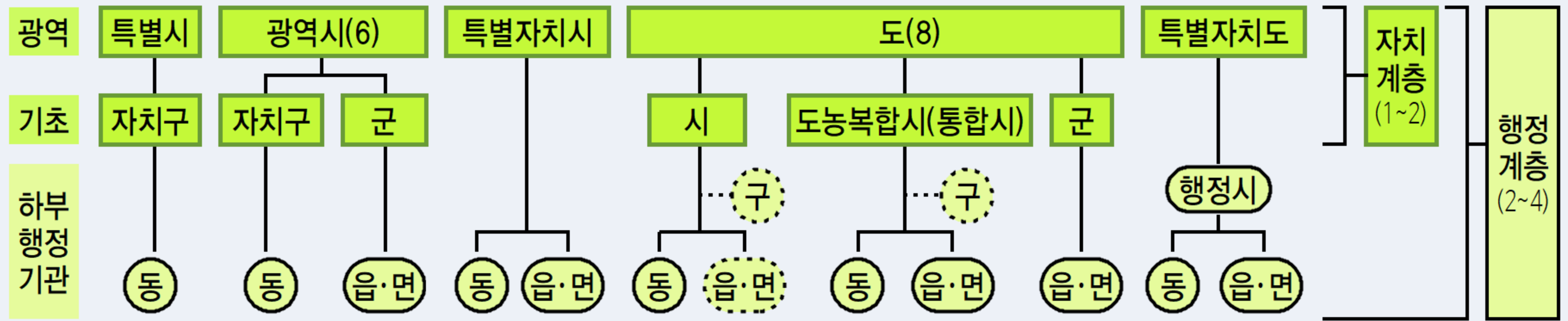
7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2계층제를 기조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단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우리나라에서 자치계층을 포함한 행정계층은 2 ~ 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광역시의 경우는 ‘광역시-자치구·군’의 자치 2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④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자치 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해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과 지방행정계층



☒ 우리나라 자치계층의 변화

- 1949년 특별시는 단층제 / 그 외 지역은 道-市 또는 道-邑·面 2층제
- 1961년 道-邑·面 2층제 ⇨ 道-郡 2층제로 변화(읍·면 자치제 폐지)
- 1963년 직할시 신설로 단층제
- 1988년 자치구 제도 신설로 특별시·직할시는 특별시-자치구, 직할시-자치구로 2층제화
- 2006년 특별자치도는 단층제
- 2012년 특별자치시는 단층제

구분	1949	1961	1963	1988	1995	2006	2012
광역	특별시, 도		직할시		직할시 ⇨ 광역시	특별자치도(제주)	특별자치시(세종)
기초	시, 읍·면	군(읍·면 자치제 폐지)		자치구			

답 ④

8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제43조 제3항. ② (○) 제42조 제2항. ③ (○) 제3조 제2항
- ④ (×) 이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말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④

9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 ㉡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
| ㉢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 ㉣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허가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 일부 내용 발췌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	아.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아. 가축전염병 예방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차. 소비자 보호와 저축의 장려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법 제13조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각 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	①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②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③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④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⑤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⑥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⑦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⑧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⑨ 공유재산관리 ⑩ 주민등록 관리 ⑪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①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②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③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④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⑥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⑦ 묘지·화장장 및 봉인당의 운영·관리 ⑧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⑨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⑩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① 못·늪지·보(洲) 등 농업용수시설 설치·관리 ②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유통 지원 ③ 농업자재의 관리 ④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⑤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⑥ 농가 부업의 장려 ⑦ 공유티 관리 ⑧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⑨ 가축전염병 예방 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⑪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⑫ 중소기업의 육성 ⑬ 지역특화산업 개발과 육성·지원 ⑭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역개발사업 ②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③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④ 지방도(地方道)·시도·군도·구도 신설·개수·유지 ⑤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⑥ 농촌주택 개량 및 추락구조 개선 ⑦ 자연보호활동	⑧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⑨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⑩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⑪ 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시립공원·군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⑫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⑬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⑭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⑮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관리 ⑯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②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③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④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⑤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①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②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답 ④

10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91년 이후 전국 광역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총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② 기초지방자치의원선거구의 획정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인구규모를 반영한다.
- ③ 2006년 기초지방의회 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이 허용됨과 동시에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 ④ 기초지방자치의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총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조례가 아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다.

해설

- ① (×) 지방선거 부활 후 실시된 1기(1991~1995) 지방의회 선거 이후 증감이 반복되고 있음.

구 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계	5,170	5,513(97)	4,180(74)	4,167(73)	3,626(453)	3,731(457)	3,692(463)	3,756(473)
시·도	866	972(97)	690(74)	682(73)	738(78)	843(81)	794(84)	829(87)
시·군·구	4,304	4,541	3,490	3,485	2,888(375)	2,888(376)	2,898(379)	2,927(386)

()는 비례대표의원 수.

• 자료출처 : 행안부 지방의회백서

- ②④ (×) 기초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기초의원 지역구별 의원총수는 2~4인으로 하되,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자치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③ (○) 지방자치 부활 후 1기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1995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1996년 기초자치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 관여 금지(정당 공천 금지,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 2005.8.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후보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2~4명)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시·군·자치구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이 50%가 되도록 하였으며,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영주체류 3년 이상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답 ③

11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그 지방자치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의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의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④ (×) 지방의회 회의의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의사정족수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의장은 회의 중지나 산회[散會]를 선포)
일반 의결정족수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봄(의장의 casting vote 권한[찬반동수시 결정권]은 없음).
특별 의결정족수	① 의원 자격상실 및 제명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②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③ 의장 및 부의장 불심임 의결, 자치단체등의 사무소소재지 변경 조례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회의의 공개	공개 원칙. 단, 의원 3명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한 경우나 의장이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가능.
의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재적 1/5 이상 or 10명 x)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 위원회는 직무사항에 관해 의안 제출 가능.

답 ④

12 지방자치법 상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④ 두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해설

① (×)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③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답 ①

13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기도 안성시 주민인 최모씨가 오늘 아침에 구입한 담배에 부과된 담배소비세는 경기도에 납부될 것이다.
- ② 사업자등록을 하고 승마투표권을 판매한 강원도 강릉시 주민 이모씨에게 부과된 레저세는 강릉시에 납부될 것이다.
- ③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인 강모씨가 오늘 취득한 양식업권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충청남도에 납부될 것이다.
- ④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인 오모씨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는 충청북도에 납부될 것이다.

해설

① (×) 담배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시·군세이므로 안성시에 납부됨.

② (×)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므로 강원도에 납부됨.

③ (○) 등록면허세는 도·자치구세이므로 옳음.

④ (×)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시·군세이므로 제천시에 납부됨.

☞ 과세주체별 지방세의 종류

과세주체	보통세(9개)		목적세(2개)	
광역시자치단체장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주1)}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2)}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 세	등록면허세		
기초자치단체장	시·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3)}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 주1) 광역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을 자치구세로 함. 주민세 개인분만 광역시세.
* 주2)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21% x)를 재원으로 함. 시·군·자치구에 납입·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은 시·군·자치구세로 함
* 주3) 특별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을 특별시세로 함.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는 특별시와 공동과세.
*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 항목을 광역시세로 함(예 등록면허세).

답 ③

14 지방공무원 제도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람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류를 신설할 수 없다.
- ③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① (○)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③ (○)

-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임용권자(시·도의회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답 ②

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외국인의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지역구·시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시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지역구·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의회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 (○)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 주의 :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소환투표권자 연령도 18세로 변경되게 된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① **주민소환투표권자** :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주민소환투표권 부여
- ②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주민소환투표일 전 22일
- ③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
 - ㉮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자격 : 주민소환투표 청구일 현재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
 - ㉮ 청구요건인 서명 주민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구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
- ④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
- ⑤ **주민소환투표 비대면 방식**(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
- ⑥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 :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⑦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 주민소환투표일 전 14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 전날까지
- ⑧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
- ⑨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
- ⑩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하지 않음

답 ③

16 주민투표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의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은 2020년에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 ④ 공무원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 ① (○) 주민투표법 제12조 제3항
- ②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③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로 낮추어 2022.1.13. 부터 시행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로 낮추어 2022.4.26. 부터 시행

④ (○)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6. 통·리·반의 장

답 ③

17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와 군 자치제가 규정되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의해 불신임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 ③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기관통합형을 취하였다.
- ④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주민직선의 단체장은 선출되었다.

해설

- ① (×)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와 읍·면 자치제가 규정되었다. (군 자치제로의 변화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② (○) 1949.7.4.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인정.
 ⇒ 1956.2.13. 지방자치법 2차 개정으로 삭제 ⇒ 1958.12.26. 지방자치법 4차 개정으로 다시 부활
 ⇒ 1961.9.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법 효력 정지.
 1988.4.6.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불신임의결권이나 의회해산권은 규정하지 않음.
- ③ (×)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을 취하였다.
- ④ (×)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억누르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로 제정된 법률이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도·서울특별시, 시·군으로 규정하고(읍·면 자치제에서 군자치제로 전환), 각 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결은 상급관청의 승인으로 대행되게 하였다. 제3공화국 헌법의 부칙에는 최초의 지방의회의 성립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성립 요건을 무효화하였으므로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 지방선거 연혁

시기	1공화국		2공화국	6공화국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후
지방선거	1차(1952)	2차(1956)	3차(1960)	4차(1991)	5차(1995)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차(1998)~11차(2018) 2~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	1대 지방의원(시·읍·면) 직선	2대 지방의원 직선	3대 지방의원 직선	4대 지방의원 직선	5대 지방의원 직선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4년마다 직선
지방자치 단체장	특별시장·도지사는 대통령 임 명, 시·읍·면장은 의회 간선	직선(시·읍·면장)	직선(서울특별시장· 도지사·시·읍·면장)	자치단체장 선거 미 실시	직선(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군수·구청장)	

답 ②

☞ 광복 이후 지방자치의 역사 : 지방자치의 성립(1·2공화국) ⇒ 중단(3·4·5공화국) ⇒ 부활(6공화국)

1. 지방자치의 성립

제1공화국 (1948~1960)	불완전한 지방자치 :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전시 중 일부 지역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집권당의 정치적 전략에 따른 계속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지방자치의 발전보다는 혼란의 연속으로 평가됨.
	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도와 시·읍·면의 5종으로 하고, 도와 특별시는 정부 직할로, 시·읍·면은 도의 관할 하에 두었음.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선(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 ② 1952년 1차 지방선거 : 전시 일부지역 기초·광역의회 의원 선거 실시(1대). 지방의회 최초 구성. ③ 1956년 2차 지방선거 : 1대 자치단체장 선출(시·읍·면장의 직선제 전환) 및 2대 지방의원 선출. ④ 1958년 지방자치법의 관치적 개정 : 시·읍·면장 임명제로 전환.
제2공화국 (1960~1961)	지방자치 전면 실시 : 4.19 혁명 이후 개정된 헌법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무게를 두었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모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선거로 구성되는 체제가 되었으나 2공화국은 단명하고 지방자치 중단.
	① 1960년 지방자치법 개정 :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주민자치형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 직선, 임기 4년, 불신임의결 및 의회해산권 인정. ② 1960년 3차 지방선거 : 서울특별시장·도지사·시·읍·면장 선출, 지방의원 선출.

2. 지방자치의 중단

제3공화국 (1961~1972)	• 지방자치 중단 : 1961년 5.16 군사쿠데타, 9월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법의 효력 정지. • 중앙집권체제로의 회귀 : 지방자치 전면 중단. 지방의회 해산, 자치단체장은 국가가 임명. 읍·면을 일반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 서울특별시의 국무총리 직속화와 부산시의 정부직할시로 승격. • 1963년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성립 요건을 무효화했으므로 지방선거는 치러지지 않음. ■ 지방자치가 중단된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된 것은 아님.
----------------------	---

제4공화국 (1972~1979)	• 지방자치 유예 : 유신헌법 본문에 지방자치 규정을 두었으나,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치 아니한다.”라고 규정. • 1988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행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
제5공화국 (1981~1988)	• 지방자치 유예 완화 : 제5공화국 헌법 본문에 지방자치를 규정하였으나,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1987년 6·29선언,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부활 규정.

3. 지방자치의 부활(제6공화국)

제6공화국 헌법(현행) 제8장 지방자치

-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노태우 정부	① 제6공화국 헌법(현행) : 지방자치 규정, 지방의회 관련 헌법 부칙조항 삭제(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② 지방자치법 : 자치단체 종류는 광역·특별시·직할시·도, 기초·시·군·자치구 ③ 1991년 4차 지방선거 : 지방의회 의원 선출과 지방의회 구성(자치단체장 선거는 미 실시)
김영삼 정부	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정(1994. 3) - 모든 공직 선거 통합 규정 ② 지방자치법 개정(1994. 12) : ㉠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 변경, ㉡ 주민투표 규정 (주민투표법은 2004년), ㉢ 자치단체장의 겸직 제한 및 연임제한 규정 ③ 1995년 5차 지방선거(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 동시선거)
김대중 정부	① 1998년 6차 지방선거(2회 동시선거) 이후 4년 마다 선거 ②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 :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과 주민감사청구권 규정 ③ 1999년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이양추진기구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설치

18 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자치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 ① (×), ③ (○) 지방채발행 한도액 내 외채 발행시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절차** :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기준으로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발행	원칙	지방의회 의결(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은 필요 없음)
	예외	외채(外債) 발행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 (외국에서 발행한 채권[외채]은 환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위험[환위험]의 관리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	원칙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승인×) +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예외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 의결

- ② (○)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행사는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된다(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는 불가).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제21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답 ③